

## 2022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### 합동분과 제1차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2. 1. 14. (금요일), 14:00~15:0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신탣근(위원장), 김영운(분과위원장), 박전열, 변미혜, 성애순, 원명(김종민), 유정숙, 윤중강, 임재원, 조남규, 김정희, 서도식, 송미경, 안귀숙, 이은주, 정용주, 한장원, 김태식, 만당(최재호), 배영동, 임장혁, 좌혜경, 천혜숙, 황경숙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# 목 차

## 【검토사항】

- 1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 
계획 검토

## 【보고사항】

-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(2022~2026) 수립 보고
- 2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

검 토 사 항

## 1.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보고 사항

# 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(2022~2026) 수립 보고

## 가. 보고사항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2차 5개년(2022~2026) 기본계획(안)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.

## 나. 추진경과

-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‘21.1.~11월)
- 전문가 자문회의(‘21.4월/8월) / 정책토론회(‘21.6월)
-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안 수립(‘21.12월)

## 다. 주요내용

- 계획기간: 2022년~2026년 / 5개년
- 성 격
  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근거한 법정계획

<b>비전</b>	<b>함께 보전하여 모두가 누리는 무형문화재</b>		
<b>방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[보호대상] 개인·단체에서 공동체로</li> <li>◆ [지원체계] 보편형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</li> <li>◆ [지향가치] 보호·보전을 넘어 가치창출·대국민 향유로</li> </ul>		
<b>추진 전략</b>	<b>모두가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보전</b>	<b>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</b>	<b>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</b>
<b>핵심 과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 지향적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마련</li> <li>• 무형유산 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확산</li> <li>• 지역 문화유산 보호기반 강화</li> <li>•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목별·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</li> <li>• 무형문화재 공개 및 교류기반 강화</li> <li>• 시대에 부응하는 전승체계 구축</li> <li>• 무형유산 산업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·교육기반 강화</li> <li>• 무형유산 콘텐츠 및 향유기반 강화</li> <li>• 세계가 공감하는 K-무형유산</li> </ul>

## 라. 의결사항: 원안 접수(출석 24명, 접수 24명)

## 2.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

### 가. 보고사항

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 나. 보고사유

-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및 보유단체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.

### 다. 보고내용

#### 1) 추진 배경

-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수립 및 공지 예정('22.1월, 청·유산원 홈페이지 등)  
\* 관련근거 :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#### 2) 주요내용 :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운용 계획

#### 가)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(매월)

- 지원대상 :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

#### ○ 지급기준

- 보유자 : 월 1,500,000원
- 전승교육사 : 월 750,000원 \* 전년 대비 1인당 월 5만원(증)
- 보유단체
  - \* 보유단체 : 월 3,600,000원
  - \*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: 월 5,500,000원

※ '보유자 없는 보유단체'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가 있는 경우보다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추가 지원. 단, 법인 미전환 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 (보유단체 2,900,000원,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 4,500,000원)

나) 전수장학금(매월)

- 지원대상 : 취약종목 보유자가 추천한 전수장학생  
 ※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: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추천, 선발 후 5년 지원
- 지급기준 : 월 275,000원

다) 전승활동 장려금 (연1회)

- 지원대상 : 연간 전승활동 실적 등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종목의 보유자·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
  - 전승활동 실적점검 기간 : '22. 1월 ~ '22. 10월 (평가일 : 12월 중)
  - 평가일 및 지급시기 : '22년 12월
- 지급기준 : 종목 특성 및 전승실적에 따라 차등지급

구분	분야	평가 사항
개인 종목	예능, 놀이, 무예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등 *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
	기술, 생활관습	
단체 종목	예능	① 전수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③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
	놀이, 무예, 의식, 기술, 생활관습	

\* 코로나 상황 및 운용 여건상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
 \* 21년부터 교육권한이 부여된 전승교육사 지급대상 포함

라) 취약종목 추가 지원금 (연 1회)

- 지원대상 : 전승취약종목 소속 보유자·전승교육사
  - 전승취약종목 (기준일: '20년 4월 35종목 선정, 3년 마다 재선정)

- 예능(5종목) : 서도소리, 가곡, 가사, 줄타기, 발탈 (5종목)  
 - 기술(30종목) : 갯길, 한산모시짜기, 매듭장, 나주의셋골나이, 낙죽장, 조각장, 악기장(북제작, 편종·편경제작), 궁시장, 채상장, 장도장, 두석장, 백동연죽장, 망건장, 탕건장, 입사장, 자수장, 바디장, 침선장, 전통장, 옹기장, 소반장, 금속활자장, 완초장, 누비장, 화각장, 윤도장, 염장, 금박장, 선자장, 낙화장.

- 지원방법 : 전승취약종목에 소속된 보유자·전승교육사가 전승활동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고 적합성 검토를 거쳐 지원 상한액까지 연 1회 연말 지원

- 전승활동 : 재료구입비용, 전시회·공연 개최비용 및 임차료 등

○ 지원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보유자	전승교육사	이수자
지원 상한액	4,716,000	3,132,000	3,132,000

\* 보유자·전승교육사가 부재한 전승취약종목의 경우, 이수자에게 지원

마) 특별지원금

○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

-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: 매월 1,000,000원
- 장례위로금 : 명예보유자·보유자(1,200,000원), 전승교육사(600,000원)
- 입원위로금 : 보유자(500,000원), 전승교육사(300,000원)/10일 이상 입원 시, 연 1회

바)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

- 법적근거 : 「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(고시 제2021-3호),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」(무형원 훈령 제29호)
- 제한대상 :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전수장학생 등

라. 의결사항: 원안 접수(출석 24명, 접수 24명)